

정보 구분	등록코드	등록사유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0101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0102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자	
		0114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	
		0115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	
		0116 농림축산식품부지원 학자금융자사업의 대출원금 또는 교육부지원 무상학자금대여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10개월 이상 연체한 자	
		0117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학자금융자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6개월이상 연체한 자	
		0118 근로복지공단인 신용보증 또는 용자 결정된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0103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0104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0105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0106 매일의월 부도대진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0107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0108 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0109 만기일 경과 어음을 1개월 이상 미결제한 자		
	0110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의 지급을 불이행한 자		
	0111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011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0113 정리금융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차주		
	대지급	0201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0202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0203 자체대손보전 관련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자	
		0204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0205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	
		0207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한 자	
		0209 학자금 대출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한 자	
		0208 학자금대출 관련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부도	0404 어음·수표 부도사실이 있는 자	
		0401 가계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0402 당좌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0403 약속어음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금융질서 문란	0960 식별정보대여	
		0961 위변조·허위자료제출	
		0962 대출사기	
		0963 보험사기	
		0964 보험사기(특별법)	
		0965 신용카드도용	
		0966 회생파산사기	
		0967 외국환허위보고	
		0968 신용회복사기	
		0969 접근매제양도양수	
	개설발급정보	0011 가계당좌 개설 사실	
		0021 당좌예금 개설 사실	
		0081 신용카드 발급 사실	
	공공정보	체납	0601 국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2 국제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3 국제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4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2016년 1월 1일부터 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5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2016년 1월 1일부터 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6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11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12 과태료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13 과태료 체납 결손 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701 관세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702 1년에 3회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703 관세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채무불이행
		0802 고용·산재보험료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산재· 고용 보험료 ·임금체	0803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804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결손 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0807 3년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1003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자
		신용 회복 지원	1101 신용회복지원원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1201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파산면책결정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본다)
			1301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자(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본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자		
	나. 2년이상 채무 변제로 채무조정사실 해제 후 3개월 이상 채무상환을 불이행한 자		
	1601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정입자금을 지원받은 자		
	1701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자		
	1702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		